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2 년 9 월 13 일

청 원 인

성 명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이태호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통인동,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소 개 의 원 : _____ 임 수 경 _____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이 태 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임 수 경		민주통합당	행정안전 위원회	비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제안이유

○ 1994년 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었음. 과거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관권, 금권 선거 등 부정선거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켰던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여전히 일부에 의해 자행되는 관권, 금권 선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며 경계해야할 악습임.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며, 이 조항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모두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선거당일을 제외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대폭 확대되었음.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 비방죄’ 등 온라인 공간의 표현을 규제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또

한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엇보다 선거법 93조 1항의 경우 인터넷 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독소조항임. 이와 함께 시설물 설치, 서명운동, 집회, 행렬 등 각종 규제 조항들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비판과 정책 형성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제 중심적 선거법의 문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선거쟁점(4대강·무상급식)’을 통한 특정 정책과제의 단속과 정책 제안 운동의 포괄적 규제로 나타난 바 있음.

○ 한편, 선거법 108조의2 또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책선거를 제약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임. 선거 시기 정당과 후보자들이 제안하는 각종 공약과 정책에 대한 언론과 단체의 비교평가는 유권자가 정책에 근거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선거법은 언론과 단체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일 뿐 아니라, ‘정책 선거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항임.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적 수단임. 따라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 행위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과 같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조항들이 존치하는 한, 올바른 후보와 정책을 선택하는 활동은 불가능함.

○ 선거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선거에서 공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공정한 선거로 인해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이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 비용 통제 등의 방법으로 정당·후보자 간의 공정한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확보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전혀 공정하지 않은 선거, 정책 경쟁이 불가능한 선거를 만들고 있음. 오히려 돈을 묶는 데 사용되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유권자의 참여를 단속하고 제한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본말이 전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대의 기구 형성이 라는 선거의 본래적 기능을 고려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음. 근본적으로 현행 선거법 상 기간/주체/방식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예외적 규제로 전환

하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수많은 규제 조항 중 핵심적인 독소 조항들에 대한 개정은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음. 이에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규제해온 주요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 반대·의견개진과 청원 운동’은 선거운동 규제의 예외조항으로 하였음. (안 제58조제1항)

나.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0조제1항)

다.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안 제82조의6)

라. 선거 180일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 (안 제93조제1항)

마.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 (안 제90조, 안 제101조, 안 제103조제3항, 안 제105조, 안 제107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8조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과 관계기관장에 대한 청원운동

제6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2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6을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의2를 삭제한다.

제110조를 삭제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251조를 삭제한다.

제2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반상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선거운동</p> <p>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u>선거운동</u>"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5. (생략)</p> <p>6. (신설)</p> <p>② (생략)</p> <p>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p> <p>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선거운동</p> <p>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u>선거운동</u>"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p> <p>-----.</p> <p>1~5. (현행과 같음)</p> <p>6.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과 관계기관장에 대한 청원 운동</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9. (생략)

② (생략)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생략)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⑥ (생략)

2. <삭제>

3~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⑥ (현행과 같음)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

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

화방 등의 실명확인) <삭제>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선거일 전 6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

-- <이하 삭제>

1~3. (현행과 같음)

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
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
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
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하는 행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

② <삭제>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삭제>

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③ (생략)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삭제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삭제>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개최할 수 없다.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삭제>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 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삭제>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삭제>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

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

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삭제>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반상회,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벌금에 처한다.